

서 정 대 학 교



수신자 각 부서(처)장 및 학내구성원
(경유)

제 목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의 건

1. 관련근거 : 서정대학교 규정집 학칙 제16장(학칙 제·개정 절차) 제74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제75조(공고기간),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 의견 제출 요청의 건(기획조정실-2023-9634, 2024.02.2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불임과 같이 공람공고를 시행하오니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람공고 및 공람이 완료된 본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4월 15일 자 시행 예정입니다.
- ※ 공람 후 의견제출 등은 소관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불임 :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람 공고문 1부.
2.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부.
 3.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기 획 조 정 실 장

기안자

강한모

기획전략과장

오성범

기획조정실장

이지

시행 기획조정실 제24-03-05호 (2024.03.25.) 접수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 www.seojeong.ac.kr

전화 031-860-5286 전송 031-859-6936 / hanmo10@seojeong.ac.kr

/ 공개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4년 4월 15일 자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2.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부서 : 각 부서 및 학과, 교수협의회
4. 의견제출 : 기획조정실 대리 강한모

2024년 3월 25일

서정대학교 기획조정실장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규정명 :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1. 개정 사유

- 1) 학칙
- ▶ 조직 개편으로 인한 변경
 - ▶ 입학허가의 절차를 위한 변경
 - ▶ 교육과정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변경
 - ▶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졸업필요학점 완화
 - ▶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요건에 대한 변경
 - ▶ 학사관련 사항에 대한 교수회의 권한 변경
- 2) 학칙 시행세칙
- ▶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 제고
 - ▶ 기타 학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행세칙 변경
 - ▶ 조직 개편에 따른 양식 수정 필요부분 발생

2.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개정내용
학칙	제6조(교직원)	특임교원 임용 및 위촉 관련 오기입 사항 변경
	제8조(조직)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22조(입학허가)	신속한 입학허가를 위한 절차 변경
	제32조(교육과정)	의미 명확성 제고를 위한 용어 변경
	제46조(졸업)	졸업필요학점에 대한 완화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전문기술석사과정 자격증 취득 졸업 트랙 추가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졸업요건 개편에 따른 수료 기준 변경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항을 고려한 반환금 기준 완화
	제71조(소집 및 심의)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권한 변경
학칙 시행 세칙	제12조(재학생등록)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반환금 기준 완화
	제48조(졸업의 기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졸업필요학점 완화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학칙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 변경
	[별지서식 제5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별지서식 제10호]	오탈자에 대한 수정
	[별지서식 제11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별지서식 제12호]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부서장) 변경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6조(교직원)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12.01.> ~중략~ 3. 특임교원 : 국가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공적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학(부)과장 및 각 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01.> ~생략~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01., 2022.12.01.> ~중략~ 3. 특임교원 : 국가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공적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 본교 발전을 위하여 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학(부)과장 및 각 부 처장의 요청을 받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2.12.01.><개정 2024.04.15.> ~생략~	오기입으로 인한 변경

제8조(조직)	제8조(조직) ①본 대학에는 교무처, 학생복지처, 행정처, 기획조정실, 입학홍보처, 국제교류처, 평생직업교육처, 산학협력처, 대외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 및 센터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04.03.25., 2006.03.01., 2011.06.07., 2012.02.10., 2014.02.26., 2016.02.29., 2017.04.27., 2019.10.01.,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3.09.01.> 1. <개정 2004.03.25.> 삭제 <2011.06.07.> 2.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3. 삭제 <2011.06.07.> ②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직) ①본 대학에는 교육혁신처, 학생성공처, 행정처, 기획조정실, 입학홍보처, 국제교류처, 평생직업교육처, 산학협력처, 대외협력처 등을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 및 센터는 소속이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04.03.25., 2006.03.01., 2011.06.07., 2012.02.10., 2014.02.26., 2016.02.29., 2017.04.27., 2019.10.01.,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3.09.01. 2024.04.15.> 1. <개정 2004.03.25.> 삭제 <2011.06.07.> 2. <개정 2006.03.01.> 삭제 <2011.06.07.> 3. 삭제 <2011.06.07.> ②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처내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
제22조(입학허가)	제22조(입학허가) ①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6.03.01., 2012.12.04.>	제22조(입학허가) ①입학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06.03.01., 2012.12.04., 2024.04.15.>	신속한 입학허가를 위하여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제32조(교육과정)	제3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5% ~ 20%, 전공교과 80% ~ 95%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10., 2019.10.01., 2022.03.01., 2022.04.15.> ②학과별 현장실습학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05.17., 2022.03.01.> ③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32조(교육과정) ①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며 학점과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5% ~ 20%, 전공교과 80% ~ 95%로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2.10., 2019.10.01., 2022.03.01., 2022.04.15., 2024.4.15.> ②학과별 현장실습학기제를 포함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1.05.17., 2022.03.01.> ③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중략)	의미 명확화를 위한 용어 변경
제46조(졸업)	제46조(졸업)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 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08.22., 2012.12.04., 2017.04.27., 2022.12.01.>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③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	제46조(졸업) ①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 학사과정은 별지서식 제1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하고, 학사과정 및 전공심화과정은 별지서식 제3호의 학위증서를 수여한다.<개정 2008.08.22., 2012.12.04., 2017.04.27., 2022.12.01.> ②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72학점 이상, 3년제 112학점 이상, 4년제 132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본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1년제 학과는 20학점 이상, 2년제 학과는 6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전문 학사학위과정의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4.03.25., 2012.12.04., 2016.02.29., 2020.02.14., 2020.11.23., 2022.03.01., 2022.12.01., 2024.04.15.> ③학부(과)는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별 전문학사과정의 졸업까지 필요한 이수학점이 상이하 며, 학과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제 60학점 이상 취득, 3년제 20학점 이상 취득)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졸업필요학점 완화

	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삭제 <2004.03.25., 2017.04.27.> <개정 2022.12.01.> ④제2항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4.03.25.>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1.>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졸업인증 기준 설정 및 시행여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과)별로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삭제 <2004.03.25., 2017.04.27.> <개정 2022.12.01.> ④제2항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학칙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4.03.25.>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1.>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학기</th><th>학점</th><th>요건</th></tr> </thead> <tbody> <tr> <td>논문트랙</td><td rowspan="2">4학기 이상 등록</td><td>24학점 이상 이수</td><td>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td></tr> <tr> <td>프로젝트 트랙</td><td>30학점 이상 이수</td><td>프로젝트 결과 충족 또는 자격증 취득</td></tr> </tbody> </table> ②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세부 및 기타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분류	학기	학점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결과 충족 또는 자격증 취득	제46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 ①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4.15.> <table border="1"> <thead> <tr> <th>분류</th><th>학기</th><th>학점</th><th>요건</th></tr> </thead> <tbody> <tr> <td>논문트랙</td><td rowspan="3">4학기 이상 등록</td><td>24학점 이상 이수</td><td>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td></tr> <tr> <td>프로젝트 트랙</td><td>30학점 이상 이수</td><td>프로젝트 결과 충족</td></tr> <tr> <td>기타 트랙</td><td>30학점 이상 이수</td><td>자격증 취득 (자동차정비기능 장·철도차량정 비기능장, 차량기술사)</td></tr> </tbody> </table> ②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에 관한 세부 및 기타사항은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분류	학기	학점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결과 충족	기타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자격증 취득 (자동차정비기능 장·철도차량정 비기능장, 차량기술사)	전문기술석사과정 프로젝트 트랙의 졸업 요건 중 프로젝트 결과와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 분리 후 트랙 신설
분류	학기	학점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결과 충족 또는 자격증 취득																									
분류	학기	학점	요건																									
논문트랙	4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이수	학위논문심사 예비심사 및 본심사 합격																									
프로젝트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결과 충족																									
기타 트랙		30학점 이상 이수	자격증 취득 (자동차정비기능 장·철도차량정 비기능장, 차량기술사)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①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 이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5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트랙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수료) ①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제46조의 이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5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이수, 프로젝트 트랙 및 기타 트랙은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4.15.> 3. 수료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본조신설 2023.06.01.][전문개정 2023.12.15.]	학칙 제46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요건 개편에 따른 수료 기준 변경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2.04.15.>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08.22., 2011.06.07., 2022.12.01.>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①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22.04.15.>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제1항의 각 호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08.22., 2011.06.07., 2022.12.01., 2024.04.15.>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항 고려하여 반환금 기준 완화

제71조(소집 및 심의)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8.08.22.>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1조(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 시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08.08.22.> 2. 대학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4.04.15.> 3. 삭제 <2024.04.15.> 4. 삭제 <2024.04.1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별 학사사항 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조항을 변경함.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경영학과, 호텔항공관광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창업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게임영상컨텐츠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4학년도 말까지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규정 제14조(전과)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학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통합 및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상담아동청소년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휴먼케어서비스학과 소속으로 보며, 본 사항의 경과조치에 관한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3조(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의 적용시기) 제46조(졸업)의 2항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은 2024학년도 후기졸업생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입금의 반환 조항의 적용시기) 제68조의2(납입금의 반환) 제2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

※ 신·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

※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 개정(안)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제정 시에는 개정(안)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

※ 개정(안) 부분에는 규정 제·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 개정, 삭제, 전문개정,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칙 시행세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2조(재학생등록)	제12조(재학생등록) ①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각종 납입금과 그 납부기간은 학기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④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법령·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08.22., 2011.06.07.>	제12조(재학생등록) ①학생의 매학기 등록에 따른 각종 납입금과 그 납부기간은 학기 개시 15일전까지 총장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특별한 사유로 지정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한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등록을 할 수 있다. ④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법령·질병·사망·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8.08.22., 2011.06.07., 2024.04.15.>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사항 고려하여 반환금 기준 완화																				
	<table><tr><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 금액</th></tr><tr><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td><td>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td>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td><td>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table><tr><th>반환사유 발생일</th><th>반환 금액</th></tr><tr><td>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td><td>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td><td>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td><td>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td></tr><tr><td>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td><td>반환하지 아니함</td></tr></table>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⑤제4항은 복학생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제4항은 복학생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8조 (졸업의 기준)	제48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전공심화 과정은 2학기(1년 과정), 4학기(2년 과정)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07.03.01., 2012.12.04., 2016.02.29.> 2.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2학점 이상인 자<개정 2020.02.14., 2022.03.01.> 3.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04.03.25.><개정 2020.11.23., 2022.03.01.> 4.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2.12.04.><개정 2020.11.23., 2022.03.01.> 5.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6.02.29.><개정 2020.11.23., 20 22.03.01.> 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7.04.27.> ③삭제 <2004.03.25.> 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2.15.>	제48조(졸업의 기준) ①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학사학위 과정 중 본 과정은 8학기 이상 등록한 자, 전공심화 과정은 2학기(1년 과정), 4학기(2년 과정) 이상 등록한 자<개정 2007.03.01., 2012.12.04., 2016.02.29.> 2. 2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72학점 이상인 자<개정 2020.02.14., 2022.03.01.> 3. 3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1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04.03.25.><개정 2020.11.23., 2022.03.01.> 4. 전공심화과정은 총 취득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2.12.04.><개정 2020.11.23., 2022.03.01., 2024.04.15.> 5. 4년제 학과는 총 취득학점이 132학점 이상인 자<신설 2016.02.29.><개정 2020.11.23., 2022.03.01.> ②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개정 2017.04.27.> ③삭제 <2004.03.25.> ④교직 과목의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사정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12.15.>	대학별 전문학사과정의 졸업까지 필요한 이수학점이 상이하며, 학과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에 따라 (2년제 60학점 취득, 3년제 20학점 취득) 원활한 학사운동을 위하여 졸업필요학점 완화
---------------------------------	---	---	--

제48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①전문기술 석사과정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취득과 작성한 논문 심사 원을 제출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 모두 통과한 자 3. 프로젝트 트랙은 30학점 이상 취득과 프로젝트 결 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 또는 재학 중 관련 직 무 기능장 등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제3호의 프로젝트 트랙 중 관련 직무 기능장 등 자 격증 인정에 대한 범위는 전문기술석사과정운영위원회 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제48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의 기준) ①전문기술 석사과정 졸업사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논문 트랙은 24학점 이상 취득과 작성한 논문 심사 원을 제출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 모두 통과한 자 3. 프로젝트 트랙은 30학점 이상 취득과 프로젝트 결 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개정 2024.04.01.> 4. 기타 트랙은 30학점 이상 취득과 입학 후 자동차정 비기능장·철도차량정비기능장 또는 차량기술사 자격증 을 취득한 자<개정 2024.04.15.> [본조신설 2023.12.15.]	전문기술석사과정 프로젝 트 트랙의 졸업 요건 중 프로젝트 결과와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 분리 후 트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23년 12월 15부터 시행한 다.	제1조(시행일) ①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단, 별지서식의 부서명칭 등의 변경 반영은 대학 의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시기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제12조(재학생등록) 제4항의 단서규정은 2024년 3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지서식 시행일 소급적용

[별지서식 제5호]

[별지서식 제5호]<개정 2022.03.01.><개정 2023.09.01.>

성 적 정 정 원

결 재	계	부처장	처장

순번	학과(주.야)	교과목	학년	학번	성명	실점수		비고
						정정전	정정후	

상기 학생의 20 학년도 학기 성적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유※

별첨 : 성적정정 관련 증빙 자료.

20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학부(과)장 : (인)

교무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개정 2022.03.01.><개정 2023.09.01., 2024.04.15.>

부서 명칭 변경

성 적 정 정 원

결 재	계	부처장	처장

순번	학과(주.야)	교과목	학년	학번	성명	실점수		비고
						정정전	정정후	

상기 학생의 20 학년도 학기 성적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정하고자 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유※

별첨 : 성적정정 관련 증빙 자료.

20 년 월 일

담당교수 : (인)

학부(과)장 : (인)

교육혁신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2023.12.15.>

퇴 학 원		교 재	계	부처장	처장	총장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성 명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 유 (학생기재란)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퇴학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등록금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학기개시일~30일 6/5 반환		31일~80일 1/3 반환		81일~90일 1/2 반환		91일~종료 전액 반환
본인은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보 호 자 : (인)						
서 정 대 학 교 총 장 귀하						
지도교수	학부(과)장			행정처	학생복지처(장학)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2023.12.15.><개정

오탈자 수정

2024.04.15.>

퇴 학 원		교 재	계	부처장	처장	총장
소속학과			학년		학번	
성 명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 유 (학생기재란)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퇴학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등록금 반환 규정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학기개시일~30일 6/5 반환		31일~80일 1/3 반환		81일~90일 1/2 반환		91일~종료 0 반환
본인은 퇴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보 호 자 : (인)						
서 정 대 학 교 총 장 귀하						
지도교수	학부(과)장			행정처	학생복지처(장학)	

[별지서식 제11호]<개정 2022.03.01., 개정 2023.09.01.>

결재	계	부처장	처장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정 정 내 용	성 명	구)	
		신)	
	주민등록 번 호	구)	
		신)	
	기 타	구)	
		신)	
정 정 사유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二
 卷

20 15 10 5

신청인 (인)

교무처장 귀하

부서 명칭 변경

일 적	계	부처장	처장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정 정 내 용	성 명	구)	
		신)	
	주민등록 번 호	구)	
		신)	
	기 타	구)	
		신)	
정 정 사유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첨 부 :

20 15 10 01

신청인 (인)

교육혁신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별지서식 제12호]<개정 2022.03.01., 개정 2023.09.01.>

[별지서식 제12호]<개정 2022.03.01., 개정 2023.09.01.,
2024.04.15.>

부서 명칭 변경

성 적 취 소 원

	계	부처장	처장
결재			

학 년	학 번	성 명	성적 취소			비고
			년	학년	학기	

위와 같이 성적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부(과) 장 : (인)

교 무 처 장 귀하

성 적 취 소 원

	계	부처장	처장
결재			

학 년	학 번	성 명	성적 취소			비고
			년	학년	학기	

위와 같이 성적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부(과) 장 : (인)

교 육 혁 신 처 장 귀하

※ 조항별로 따로 입력 할 것.

※ 신·구 대조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개정된 내용에는 색깔, 밑줄 등의 표시를 할 것.

※ 조항 신설 및 삭제 시에는 현행, 개정(안) 칸 중 한쪽에만 입력할 것.(제정 시에는 개정(안) 부분에만 제정 규정 입력, 삭제 시에는 현행 부분에 기존 규정 입력)

※ 개정(안) 부분에는 규정 제·개정 표시 방식에 의거하여 조항에 신설, 개정, 삭제, 전문개정, 본조신설 등의 규정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것.